## 6.4 폐기물

- (1)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(2) 건축물이나 설비, 자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, 석면안전관리법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09호 (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), KOSHA GUIDE H-70-2020 (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지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해체·제거하여야 한다.